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11. 2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80호로 2022년 11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의 위임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급식지원방법 현행화(안 제3조)
- 다. 관련 법령 등에 맞는 정확한 용어로 변경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2. 10. 27. ~ 11. 6. / 1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2. 6. 2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의 위임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2. 6. 22.)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급식지원 방법을 조문에 반영하고자 “아동급식협력업체”에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남부교육지원청”을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을 명확히 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2. 6. 22.)에 따른 변경사항과 현재 운영 중인 아동급식지원 방법을 조문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6. 21.>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6. 21.>
-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6. 21.>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11. 2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81호로 2022년 11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복지정책 수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영등포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나.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다. 1인가구 지원 사업 및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
(안 제5조 ~ 제6조)
-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마. 사무의 위탁(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2022. 10. 6.~ 10. 26.)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복지정책 수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등포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이고 8개의 본칙 조문 및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등 총칙적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1인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지원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1인가구에 대한 돌봄서비스, 사회안전망 구축, 주거지원, 커뮤니티 지원, 건강 및 식생활 지원, 문화·여가 생활 지원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규정

하였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1인가구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1인가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최근 우리사회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영등포구의 1인가구 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1인가구 비율이 34.7%에서 2021년도는 41.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연도별 1인가구 현황

연도	전국			영등포구		
	전체가구 수	1인가구 수	1인가구 비율(%)	전체가구 수	1인가구 수	1인가구 비율(%)
2017	19,673,875	5,618,677	28.6	147,559	51,151	34.7
2018	19,979,188	5,848,594	29.3	149,831	53,477	35.7
2019	20,343,188	6,147,516	30.2	153,923	58,214	37.8
2020	20,926,710	6,643,354	31.7	162,391	64,000	39.4
2021	21,448,463	7,165,788	<u>33.4</u>	168,518	69,806	<u>41.4</u>

(자료출처 : 국가통계포털)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가족정책의 대상에 1인가구를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2018. 1. 16.)을 통하여 1인가구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복지정책 수요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6.>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11. 9. 15.>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③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